



통신기기 수출 애로 및 지원 건의

< 본회 정보통신산업팀 >

I. 건의 배경

통신기기 산업은 이동전화 가입자의 급증과 인터넷 등 정보화 촉진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CDMA서비스 개시를 계기로 장비 및 단말기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내수시장을 수입대체 후 수출에서도 무역수지 개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경쟁과열로 통신기기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심각한 국면으로 빠질 우려가 지대하다. 특히 통신기기 시장을 이끌어온 단말기가 보조금 폐지 이후 침체에 빠지고, 또다른 축인 네트워크장비 및 초고속인터넷 장비도 내수가 한계수요에 근접하였다.

이에 업계로부터 수출상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한 결과 EDCF 지원 강화와 수출보험제도 개선, 인증지원 확대, 해외시장 개척 강화 등을 통해 업계 애로 해소 및 수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통신기기 수출 경쟁력 강화, 통신기기 수출 증대 및 무역 수지 개선에 기여, 국내 경제 전반의 침체 회복의 견인차 역할 수행이다.

II. 수출업계 애로 및 건의 사항

1. 해외 인증 획득에 관한 건의 사항

가. 해외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자금 확대

현황 및 애로사항

중소기업청에서 '98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인증 획득시 소요자금을 '98년 25억원, '99년 58억원, 2000년 84억원, 2001년 107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700만원 한도(소요비용의 70% 지원)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수출 파급효과가 큰 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이 없어 가산점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1년에 1~2번 정도만 지원하므로 제품 개발 시기가 안 맞으면 곤란하고 지원 예산이 수요업체에 비해 부족하다.

* '98년 신청업체 860개사 중 380개사, '99년 1,600개사 중 860개사, 2000년 2,644개사 중 1,361개사 지원

또한, 중소기업청 외에는 자금지원 기관이 없다.

건의 사항

- 지원자금의 규모 확대
 -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 예산 대폭 확대 : 연간 200억원 이상
 - 중소기업청 외에 관련 정부 부처에서도 지원요망
- 상시지원체제 도입
 - 매월 또는 격월로 신청접수 받아 지원
- 용자지원제도 신설
 - 무상지원자금만으로는 수요충족에 한계
 - 저리용자로 인증을 획득한 후 수출 증대하여 상환하는 제도 도입
- 중견기업도 용자대상에 포함
 - 현재는 중소기업만 가능하나, 30대 대기업 집단 등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은 혜택 필요
- 수출실적 및 유망 수출기업에 대한 가산점 제도 폐지
 - 내수 위주의 업체가 수출시장 개척시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

나. 정부 및 산하기관의 고가 시험/계측장비의 개방 및 대여 제도 활성화

현황 및 애로사항

국내외적으로 전자파내성(EMS), 전자파흡수율(SAR) 등 각종 규제가 신설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시험장비 구입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험/계측에 필요한 장비가 보통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소요되므로 중소기업이 일일이 장비를 구입함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부담이 과중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 전파연구소(정보통신부)와 중소기업청이 2~3년전 업체들에게 장비 개방 제도를 시행, 기업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파연구소 등의 개방기관도 인증시험 관련 업무용 장비를 업체에 개방하고 있으나 자체 업무가 많을 경우 기업들이 이용하기 곤란하다.

기업수요에 비해 개방 기관이나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경쟁국인 대만 등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험/계측장비 시설을 정부차원에서 구축, 지원하는 제도가 활성화 되어있어 경쟁력 확보의 주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건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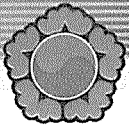
-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시험/계측장비 개방 및 임대 "전문기관"을 정부산하에 다수 설치 (주요 지역별, 공단별)
- 현재 개방하고 있는 기관의 장비를 자체업무용과 업체 개방용으로 구분하고 장비의 종류와 수량을 대폭 확충
- 이용 가능장비 목록 및 장비개요를 기업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 요망
-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비용을 받고 장비를 개방 또는 대여하여 예산 재투자 노력 확보
- 업체 이용시 장비의 손상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해당기관 전문가가 반드시 참관지원

다. 주요 국가의 해외 인증시 국내시험성적서 인정 조기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정보통신기기 수출시 대상국가의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 강제규격 : 미국의 FCC, 캐나다의 CSA, EU의 CE 등 국가주관 의무규격
- 임의규격 : 협회 등이 임의로 제정, 국가가 직접 관장하지는 않으나 UL, CDG의 경우처럼 주 정부 또는 바이어(통신사업자 등)의 요구에 의한 사실상의 강제규격 인증취득에



는 대개 CoC, DoC의 두가지가 있다.

- CoC(Certification of Conformity) : 규제국가의 시험기관 또는 규제국가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를 첨부, 규제국가의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고 획득하는 방법(소요기간 : 4주)
-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 규제국가에서 인정한 자국 또는 타국의 시험소에서 시험받은 성적서를 토대로 규제국가에 통보만 하면 됨(소요기간 : 2 주)

FCC(Part 15:디지털기기 및 무선주파수 장치)의 경우 미국이 지정한 시험소 (NVLAP)를 통한 DoC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여 우리 업계에서 선호하고 있으나 미국과의 MRA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태국, 일본 등 인근 국가의 NVLAP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일부 민간기업(LG전자, 삼성전자, 한국Tonkin EMC 등)이 NVLAP(국가위임시험소)인가를 받았으나 국가간의 MRA가 체결되지 않아 미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 NVLAP : National Voluntary Laboratories Accrediation Program

UL 및 CDG의 경우 DoC제도가 없고 CoC(Certification of Conformity)밖에 없어 미국에서만 직접시험을 받고 인증을 신청하여 취득해야 한다.

- UL은 UL Korea를 통해 최근 국내에서도 시험 가능

건의 사항

- 다자간 MRA체결 이전이라도 미국, EU 등 주요 수출국가에 대한 국내 시험성 적서의 상호인정은 조기 추진
 - 국내에 외국의 지정시험기관 조기 구축
 - 전파연구소, 산업기술시험원 등 정부 산하 기관에 설치
 - 지정시험기관 등 시험장비 구축능력이 있는 업체의 시험소 인정 추진

- APEC MRA 추진시 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 체제 조기 구축

라. 해외 규격 및 인증에 관한 전담기관 설치 및 정보지원 강화

현황 및 애로사항

- 중소기업이 해외 규격 및 인증 취득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취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 기술기준(표준), 구체적인 절차, 비용,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 /분류하여 제공하는 기관 또는 업체 부재
 - 이로 인해 외국 규제기관 등에 직접 자료를 요청해야하나 기간이 길어지고, 취득하기가 어려운 실정

건의 사항

- 정부산하에 정보통신기기 해외규격 인증지원 전문기관 설치
 - 설치 : 기존 전파연구소 또는 산업기술평가원 등에 설치
 - 기능 : 기술기준, 절차, 비용 등 수출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 자료 수집 및 제공 및 인증 획득에 관한 상담, 업무대행 등
- 주요 수출지역에 해외인증 등에 관한 전문 지원기관 설치
 - 대상지역 : 미국, EU 등
 - 기능 : 인증관련 정보수집 제공, 업무 대행

2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강화

가. 통신장비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우선지원 강화)

현황 및 애로사항

- 1) 통신장비에 대한 EDCF 지원 추이

통신장비에 대한 EDCF는 '92년 439억원, '93년 395억원으로 전체 EDCF의 61%~78%의 절대적

< 통신장비에 대한 EDCF지원 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누계	2001(계획)
총규모(A)	50	1,029	1,258	3,031	3,831	1,818	2,659	2,429	15,891	3,200
통신분야(B)	395	82	346	844	360	600	936	0	3,487	-
지원비율(B/A)	78	8	28	28	9	33	35	0	21.9	-

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94년~'97년까지는 8~28%로 비중이 크게 축소되었고 '98~'99년에는 전체의 33%~35%로 다소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는 통신사업에 대한 승인 실적이 전무하다.

※ 지금까지 업종별 총 지원(승인기준) 비중이 통신 22%로 교통(25%)에 비해서 떨어지며 최근에는 에너지(16%), 보건(13%) 등 타분야에 대한 지원이 늘고 있는 실정

2) 통신장비의 특성 및 지원 확대의 필요성

통신장비는 정보통신시대에 가장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이다. TDX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막대한 정부예산과 업계의 개발비가 소요되어 우리나라가 오늘날 통신장비 자립국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 CDMA장비 및 단말기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도 TDX 기술이 밑받침

국내 교환기 내수시장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좁은 내수시장도 시장개방에 따라 외국기업들이 상당부분 잠식하였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21세기 경쟁력의 핵심인 통신장비산업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운 실정이다.

통신장비는 특성상 처음 설치한 시스템업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게 되므로 10년 이상 수출의 지속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통신망 현대화사업은 개도국 또는 후진국이 대부분 정부 또는 국영 기업이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추진하므로 EDCF 지원 없이는 사실상 수출이 곤란하다.

TDX 등 통신장비는 부품의 국산화율이 70% 이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통신장비의 EDCF지원은 수백개 이상의 부품 등 관련 업체의 동반 수출효과가 지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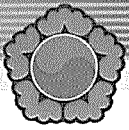
건의 사항

- 통신장비에 대한 EDCF자금 지원 비중 확대
- EDCF 절대 규모의 증액
 - 연간 승인액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나. 지원결정 등 절차의 신속화

현황 및 애로사항

- 1) 현재의 EDCF지원시 주요 절차 및 소요기간
 - 현재 명문화된 처리기간은 없으며 절차별 통상적인 처리기간은 아래와 같다.
 - 지원신청서 접수(외교통상부)
 - 재경부 이관 : 2~4개월
 - ※ 우리나라의 재외공관을 경유, 외교통상부(통신사업의 경우 정보통신부)에서 재정경제부로 이관
 - 재경부 → 수출입은행에 심사요청 : 1개월~2년
 - 수출입은행 심사 → 재경부에 보고서 제출 : 6~10개월
 - 정부(재정경제부)의 지원방침 결정 : 6개월~1년
 - ※ 재정경제부의 내부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변수 발생
 - 양국 정부간 협정 : 3~6개월
 - 차관 계약 체결 : 2~3개월



- 공급계약 체결 : 1개월
- 총 소요기간 : 약 2년~4년

위의 절차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부의 지원방침 결정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2) EDCF 지원절차 신속화의 필요성

현재 EDCF 지원 대상국들의 통신망 현대화사업은 향후 몇년후면 대부분 종료될 전망이다.

교환기, 즉 TDX는 IMT- 2000으로의 변화 추세와 유선의 경우 일부 개도국 및 후진국을 제외하고 거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향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독립국가연합(CIS) 등 우리의 EDCF 지원대상 국가들의 통신사업자들이 현재 대부분 민영화를 추진중이거나 할 예정이다.

민영화사업자의 경우 이익을 중시하므로 보편적 통신서비스 즉, 비상업적 통신사업은 하지 않게된다.

※ 상업적 사업은 OECD가이드라인에 의해 원조자금 지원 곤란

또한 비상업적 통신사업을 하더라도 민영화 된 기업에 대해서는 당해 국가에서 채무보증을 하지 않으므로 EDCF지원을 통한 통신장비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신장비는, 생산 국가(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는 선진국이며 업체들은 세계적인 대기업(모토로라, 루슨트테크놀러지, 노키아, 에릭슨 등)이다.

선진국의 경우 용자 외에도 무상지원 등 지원방법이 우리에게 비해 다양하고 조건이 우수하다. 반면 수출 대상기업은, 자금지원이 없이는 통신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곤란한 후진국이다.

EDCF지원 결정까지의 시일, 특히 심사과정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자금 요청 국가에서 아국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 제기 등 사업의 무산 사례가 발생하며 사업지원이 결정되어도 기간이 너무 오

래 지나면 환율변동 등으로 처음 체결한 계약과 많은 변동이 발생하여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

건의 사항

○ 지원 결정심사 기간의 단축

- 주요 절차에 대한 결정기간 명문화

• 차주국으로부터 신청서 접수후 수출입은행에 심사의뢰 : 6개월 이내

• 수출입은행의 심사 기간 : 3개월

• 정부의 지원 방침 결정 : 3개월 이내

※ 위 세단계 외에도 가급적 처리기간 명문화

○ 지원 요청국 및 해당기업에 대해 지원 결정 계획 등의 정기적 통보

- 신청국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상황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안내 희망

- 신청업체의 입장에서도 진행상황 및 지원여부를 빨리 알아야 포기 등 조치 가능

다. 지원 대상국가의 확대

현황 및 애로사항

1) EDCF 지원 대상국가 현황 및 확대의 필요성
현재 EDCF지원대상 국가는 76개국, 그러나 이 중에도 국가신용도 등 약간의 문제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도 사실상 지원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76개국 이외에도 EDCF지원을 통한 장비수출이 요구되는 나라가 많으나 현재는 불가능 하다.

※ 최빈국으로 분류된 나라에 대해서는 지원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러한 나라가 통신장비의 주요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

건의 사항

○ 최빈국 등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국가에 포함

※ WTO 등 국제규약에 어긋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대

○ 기존 76개국에0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지원

3. 수출 보험 관련 제도 개선

현황 및 애로사항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출시 물품대금 회수 불가 위험에 대비하여 수출보험에 가입코져 한다.

그러나 외국의 신규통신사업자 등에 수출시는 수출보험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 수출보험공사가 부보해 주지 않는 사유는 대금 지불할 기업(통신사업자)이 신생 법인이기 때문에 지불능력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
- 신규통신사업자는 재무제표 등 실적이 없으므로 기존 실적을 보고 보험 부보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곤란

건의 사항

- 수출 보험 부보조건 완화
 - 신규통신사업자에 대한 수출시
 - 모회사가 재무 능력이 있거나, 국책 프로젝트인 경우 등은 예외 인정
 - 기타 경우에도 부보조건 완화 요망
- 보상한도 확대 및 리스크매니지먼트 지원

4. 통신장비 공급(수출)자의 자체 금융(벤더파이낸싱) 지원 제도 개선

현황 및 애로사항

통신장비 업체가 EDCF를 이용하기 불가능할 경우 자체 금융 즉 벤더파이낸싱을 이용하여 수출하였다.

이 경우 수요국가에서 요구하는 금리에 비해 약 3~4% 정도 높다.

이 차액분을 공급자 즉, 통신장비 수출업체가 부담하고, 수요국가의 요구 금리대로 수출입은행이 수요국가에 자금을 융자해주길 희망하나 현재는 불가능(수출입은행이 내부규정 등을 사유로 수용 거부)하다.

건의 사항

벤더파이낸싱으로 수출시 금리차액을 벤더(장비업체)가 부담할 경우 수요국가의 요구 이율대로 융자 요망(이자 차액은 수출업체가 부담)

5. 해외전시회 참가 등 시장 개척 지원 강화

현황 및 애로사항

정부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확대에 따라 해외전시회 참가시 자금이 지원되어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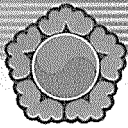
그러나 정보통신 기업들의 수출시장 진출 증대로 전시회 참가 수요에 비해 자금 부족으로 지원 규모가 축소되었다. 이러한 지원 금액은 전시회 총 참가비용의 20% 내외에 불과하다.

- ※ 1부스만 참가해도 임차료외에 장치비, 인쇄비, 출장비, 운송비 등 제반경비가 약 3,000만원 이상 소요

최근 정보통신산업뿐 아니라 전 업종에 걸쳐 한국공동관 형태 등의 해외전시회 참가가 크게 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고 있다.

건의 사항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자금 절대규모 증대
 -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KOTRA 포함) 예산 확대
 - 단체능력(규모)과 산업비중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 배분(1단체 1전시회 지원 원칙은 지양)
 - 정보통신부 예산 확대
 - : 정보통신 산업계 수요에 맞게 늘리고 산하 단체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 ※ 현재는 10개 미만의 전시회에 대해 산하단체를 통해서만 지원
 - 기타 유관부처 지원자금 신설 요망 (농림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



- 한국관 구성 공동참가 업체에 대한 지원 비율 제고
 - 기본부스 참가업체 : 입차료의 100% 지원
 - 2부스 이상 참가업체 : 1부스는 입차료의 100%, 추가부스는 50% 지원

6. 이동전화가입보조금 지급 자율화로 수출경쟁력 제고

현황 및 애로사항

우리의 휴대폰 경쟁국가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이다. 이들 국가는 우리보다 내수시장이 3~5배 이상이고 경쟁국 중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 최근에는 단말기 수요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있다.

〈예 : 단말기 무료 + 20만원 지급〉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6월 1일부터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었다.

이는 수요위축 및 내수가격 하락에 수출시장 과열로 수출가격의 하락과, 공장 가동을 저하, 부품 구입 단가 상승 등으로 경쟁력 하락, 관련부품 업계(800여개사)와 임가공 등 2차 벤더업체(20,000여개사) 등의 매출 하락으로 국내 경기 전반의 침체를 초래하였다.

건의 사항

- 이동전화 사업자에 의한 보조금 자율화
 - ⇒ 국내 경기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제고
- 사업자와 가입자의 계약사항으로서 의무가입 기간제 도입
 - ⇒ 지나친 단말기 교체로 인한 과소비 방지
 - ⇒ 이동전화사업자의 부실화 예방

7. 해외 주요 통신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외교적 지원 강화

현황 및 애로사항

유선 통신망 현대화, 이동통신망 구축 등 통신

사업은 대개 당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통신망 사업권이 확보되면 자체로도 수익불 이상의 시스템 수출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단말기 및 관련 부품 수출에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통신시스템 관련 입찰시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자국의 업체가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최근 우리나라도 정부 노력 크게 증대

건의 사항

- 해외 통신사업권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
- 통신사업 추진중인 국가와의 불필요한 외교 분쟁 지양 및 조기 해결
 - 〈예 : 중국과의 마늘 분쟁 등〉

8. 중남미 등 주요 수출지역에 대한 무비자 (No-Visa) 협정 확대

현황 및 애로사항

휴대폰, 위성방송수신기 등 중남미 지역으로 무역이 증대하는 추세이다.

거래선 상담, 현지 생산·판매 지원 등을 위해 출장을 가야할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나 입국사증(VISA) 발급 문제로 때를 놓치는 경우 발생 등 수출에 지장을 초래한다.

건의 사항

- 중남미 지역에 대한 무비자 협정 확대
-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한 비자 기간 연장
- 해외전시회 출품 등 마케팅 활동 출장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완화
 - 정부(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기청 등) 추천(보증)시 발급 조건 완화